

2023. 11. 20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19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

경제수사대장	천명철	02-2133-8805
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대부업수사팀장	김종윤	02-2133-8840
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5쪽

관련 누리집 (메뉴)	http://news.seoul.go.kr/safe/ public_cop_intro
----------------	--

서울시, 400억 원대 불법대부 일당 구속, 범죄수익추징보전

- 9,073회에 걸쳐 총 400억 원대 불법 대출, 최고 연 203% 폭리 이자 수취, 주범 1명 구속 및 공범 4명 불구속 송치
- 지자체 특사경 중 최대 범죄수익금 총 69억 원 추징보전 인용 결정
-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,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한 시민 제보 적극 당부

※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,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,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.
-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 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,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%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.
- 또한,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은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하여 지난 9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까지 마친 상태다.

-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축소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.
 - 주범 A씨는 대출내역을 숨기기 위하여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불법대출광고 전단지 배포하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을 실행하면서 조직을 관리해 왔으며,
 - 대출금 등 대출내역은 대부분 50%만 장부에 기재하여 범죄규모를 축소하여 장부를 관리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,
 - 특히, 적발된 불법대부업자 A씨는 과거 2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.

- 또한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69억 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9월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규모이다.
 -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미리 일반재산을 은닉하거나 함부로 양도, 매매, 기타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상 보전 절차로서 부적법한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이다.

- 한편 서울시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서민·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둔화에 따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 -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「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」에 적극 참여하여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등 업무협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단속과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,
 - 청소년을 대상으로 누리소통망(SNS)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등의 구입비를

대신 납부해 주는 「대리입금」 등의 불법 대부행위 근절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〈 형사처벌 적용법 조항 〉

- 「대부업」 제19조 제1항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)
 -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자(법 제3조 제1항 위반)
 -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자(법 제9조의2 제1항 위반)
- 「대부업」 제19조 제2항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)
 - 대부업 등록 없이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(법 제11조 제1항 위반)

- 아울러, 서울시는 서민·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시,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·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대부업자 특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.
- 시민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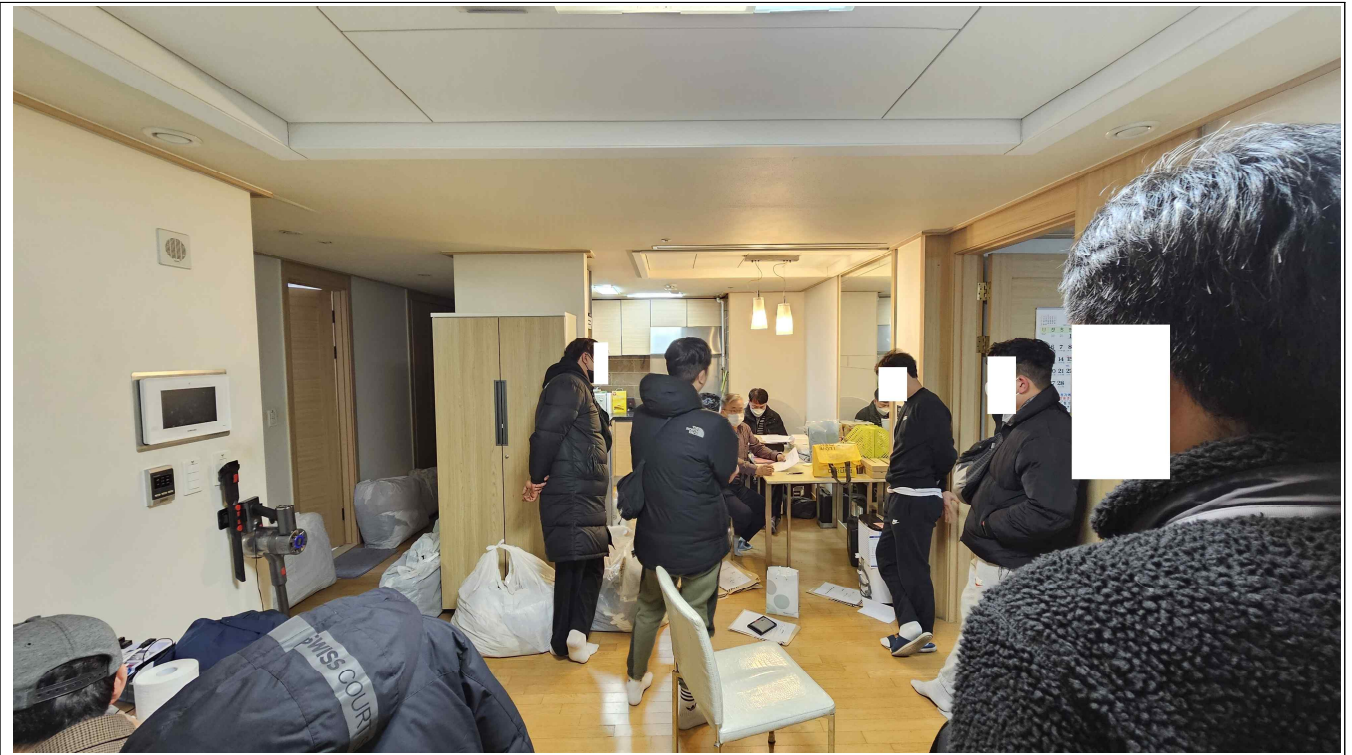
〈불법 대부행위 신고·제보 방법〉

접속방법	접수채널	신고방법
서울시 누리집	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	① 서울시 누리집(www.seoul.go.kr) 접속 → ② 분야별 정보 '안전' 클릭 →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→ ④ 본인인증 후 신고글 작성
서울시	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	① 방문 :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,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② 온라인 : https://sftc.seoul.go.kr ③ 전화번호 : 1600-0700
스마트폰 앱	서울스마트 불편신고	① '서울 스마트 불편신고' 앱 다운로드(앱스토어) →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→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법신고로 변경 → ④ 신고내용 작성
전화	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	① 전화번호 02-2133-8840, 02-2133-8844

-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“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”라면서 “고금리 이자 수취,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

첨부 압수수색 현장 사진

※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있는 사진은 모자이크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피의자 사무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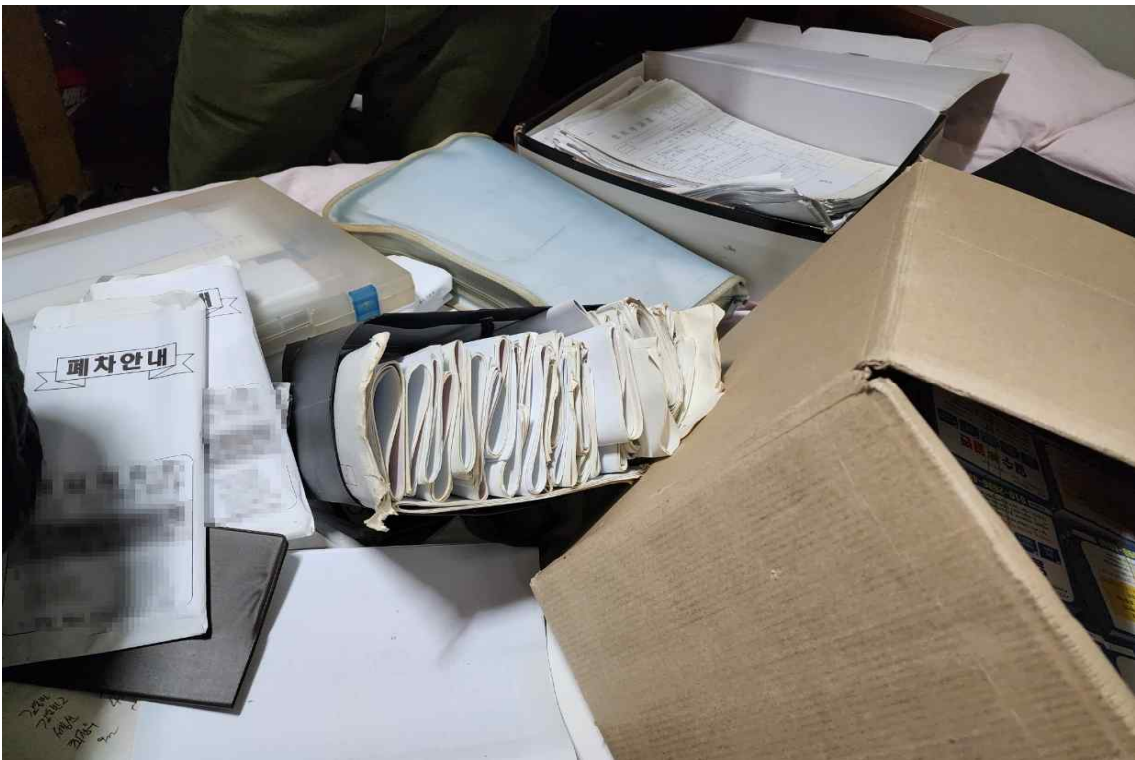


피의자 사용 차명폰

※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있는 사진은 모자이크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출 관련 서류 및 전단지



대출 관련 서류